

2021. 4. 7. (수) 재·보궐선거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 여러분도
‘선거권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재·보궐선거가 궁금해요



재·보궐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 ▶ 선거일 투표 | **2021. 4. 7.(수) 오전 6:00 ~ 오후 8:00**
- ▶ 사전투표 | **2021. 4. 2.(금) ~ 4. 3.(토) 오전 6:00 ~ 오후 6:00**
- ▶ 선거권 연령 |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재·보궐선거는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나요?

- ▶ 서울, 부산 등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 상세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검색해 보세요.



재·보궐선거란?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도지사 등의 자리가 당선인의 사퇴·사망 등으로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예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지요.



선거운동, 함께 알아봐요



선거운동이란?

- ▶ “기호 0번! 저에게 투표해주세요!” 선거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후보자들이 외치곤 하죠.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선거운동’인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1. 3. 25. ~ 4. 6.(13일 동안)** 이예요

- ▶ 후보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문자 전송



e-mail 전송



명함 배부



어깨띠 등 소품 이용



현수막 게시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첨부



거리 유세
(공개장소 연설·대담)



미디어 광고



TV토론



그 밖에 법이
허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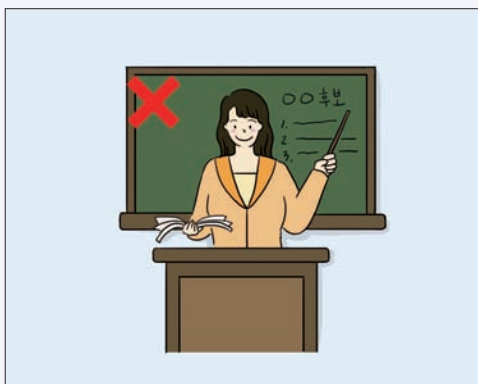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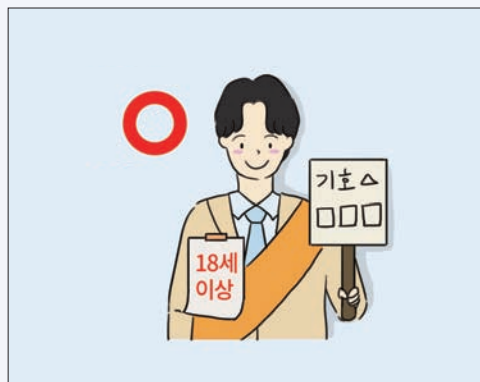
- ▶ 선거운동은 정당,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만 18세 이상)**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 다만 교사, 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는 YES!



단, 공무원, 교사는 NO!



만 18세 이상 선거운동 YES!



만 18세 미만 선거운동 NO!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평 상 시

- 선거일이 아닌 때 학교 운동장·거리 등 건물 밖에서 개별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하기
 - * 마이크를 이용하거나 연설로 후보자 지지 부탁 금지
- 선거일이 아닌 때 교실·강당 등 건물 안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연설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하기
 - * 마이크를 이용하거나 2개 이상 교실을 다니면서 후보자 지지 부탁 금지
-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직접 통화방식)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하기
 - *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전화 선거운동 금지
- 문자메시지로 후보자에 대한 응원 부탁하기
-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동영상 올리기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기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



문자메시지로
후보자에 대한 응원 부탁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 올리기



하면 안되는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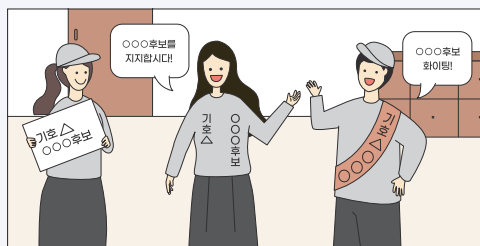
특정 지역이나 지역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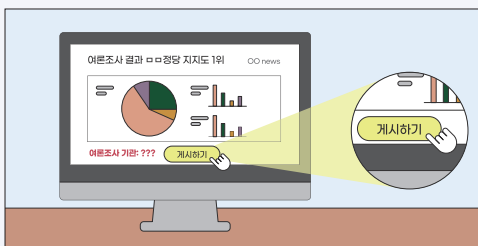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 기숙사, 친구 집 등을 방문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상징물을 착용하는 행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하면? 대표전화 1390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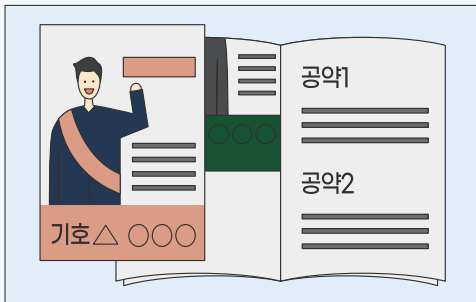


다양한 선거정보를 알아봐요



다양한 선거정보를 알아봐요!

- ▶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겠죠? 내 생각을 정립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해 보세요.
- ▶ TV, 유튜브 등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기
- ▶ 선거벽보·선거공보 확인하기
- ▶ 가상 선거체험하기[사이버선거역사관(<http://museum.nec.go.kr>)]





후보자의 정책도 꼼꼼하게 비교해요!

- ▶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와 맞는 공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 ▶ 후보자별로 비슷한 공약의 차이점 찾아보기
- ▶ 관심 공약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기
- ▶ 토론 후 공약에 대한 순위 매기기

· 정당별 10대 정책 찾아보기 · 10대 정책 우선순위 비교하기	· 후보자 공약 순위 매기기 · 같은 공약의 차이점 찾아보기	· 관심 공약에 대해 토론하기 · 공약에 대한 순위 매기기
· 분야별 10대 공약 찾아보기 · 내가 원하는 공약점수 매겨보기	· 정당 정책에 대한 언론 평가 기사 읽어보기	·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단순 반복되지 않는지 살펴보기



선거 요모조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다양한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분야별 정보 | 역대선거통계, 투표율 정보, 선거제도, 정책선거, 정당정치자금제도 등
- ▶ 통합 자료실 | 유권자의식조사 등 각종 간행물, 민주시민교육자료 등
- ▶ 위원회 소개 |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조직, 연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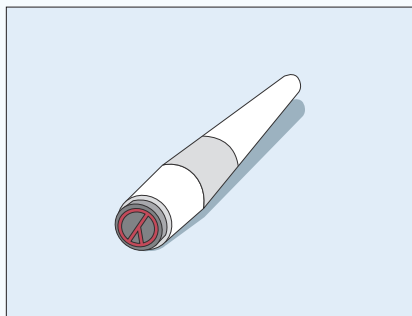


투표,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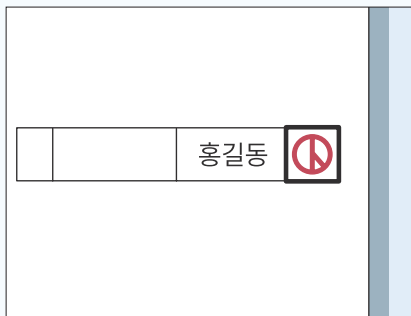


정확한 기표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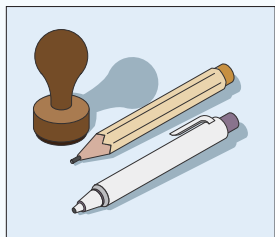
- ▶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도 내 의사가 무효가 되면 안 되겠죠! 정확한 기표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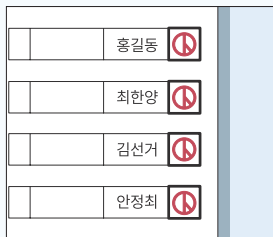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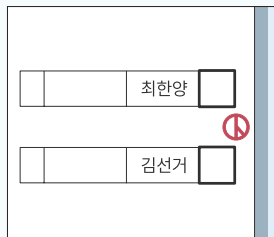
투표도장을 기표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펜이나 다른 도장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



여러 후보자에
투표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도장을 어느 기표칸에도
찍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췌! 비밀선거의 원칙 아시췌?

투표를 하고나서 몇 번 후보자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니까요.

단, TV·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가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 투표소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건 가능하니 이럴 땐 자연스럽게 응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면?

▶ 할 수 있는 것 I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 참여 권유하기



▶ 할 수 없는 것 I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



집집마다 방문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투표하기 전에는?

▶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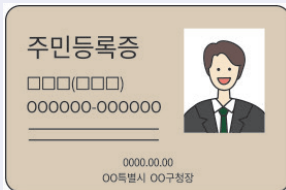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검색
-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확인
 - ※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 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어요.

▶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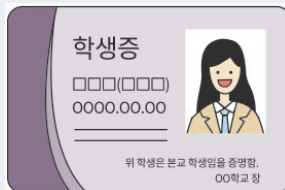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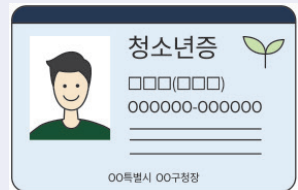
- 주민등록증, 학생증(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요!



투표 절차가 궁금해요!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을 수 있어요!

투표 참여의 뿌듯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한 투표인증 사진을 찍어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 있어요. 단, 투표소 및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1390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해서 물어 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검색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 거 연 수 원